

#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



## 퀵서비스기사 특징

### 퀵서비스기사 정의

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

이륜택배 또는 이륜자동차 택배라고도 불리며 도시와 인근 지역의 서류 등 소화물 수송

### 주요 사고유형

퀵서비스기사는 소화물 배송 시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며 도로 운행시간이 길고, 배달시간이 촉박하여 타직종에 비해 산업재해에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.



급차선 변경



중앙선 침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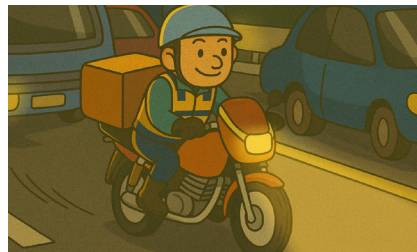
빗길, 눈길에 미끄러짐



넘어짐

### 업무 특성

- 1 이륜자동차는 보호막이 없고 균형 유지가 어렵다.
- 2 이륜자동차는 커브 길에서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가 쉽다.
- 3 이륜자동차는 눈이나 비가 올 때 노면이 미끄러워 더욱 위험하다.
- 4 이륜자동차의 차체가 작아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벗어나기 쉽다.
- 5 야간에는 이륜자동차가 잘 보이지 않는다.
- 6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급조작은 타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다.



## 주요 작업 및 유해·위험요인



포장·적재

### 작업 내용

소형 소화물에 대한 포장 랩핑, 비닐 로프를 이용한 묶음 작업 후 이륜자동차에 적재

### 유해 위험 요인

- 분류작업 중 이동대차에 부딪힘
- 칼, 가위 사용에 따른 베임
- 화물 사이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끼임
- 이륜자동차 머플러 접촉에 의한 화상
- 중량물 반복 상차에 의한 근골격계질환



배송

### 작업 내용

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집된 소형 화물을 배달차량(이륜자동차)을 이용하여 도로 운행, 배송

### 유해 위험요인

- 신호 미준수, 과속, 전방주시 소홀 및 음주운전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
- 빗길, 눈길에 운전 부주의, 계단이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짐



## 주요 재해사례



### 부딪힘



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좌회전 차량과 부딪힘



### 교통사고



음주운전,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충돌



### 넘어짐



주행 중 도로 패인 부분에 걸려 이륜자동차와 함께 넘어짐



### 예방대책

- 이륜자동차 운행 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 내 진입 금지
-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 반드시 착용(자전거 운행 시 「도로교통법」에 적합한 안전모)
- 타 차량의 가해 상황,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시야 사각지대 및 보행자의 위반행위 등 돌발상황을 대비하여 방어운전 실시
- 빗길, 눈·빙판, 모래 등 노면상태, 급회전 구간 등 도로 구조 등을 확인하고 서행 운행



## 사망사고 예방 'Safety Alert Message(SAM)'

- ☑ 「도로교통법」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,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.
- ☑ 운행 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.(과속, 난폭운전,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 금지)
- ☑ 눈, 비 등 기상여건을 확인하고, 야간·출퇴근 시간 등 취약시간 배달 시에는 전조등을 켜고 방어 운전한다.
- ☑ 이륜자동차 바퀴, 브레이크,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한다.
- ☑ 안전한 운전을 위해 급하게,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는다.
- ☑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급하게 출발하지 않고, 노란불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로 주행하지 않는다.  
(교차로 통행 전 좌우 확인하고 방향지시등 켜기)
- ☑ 운전 중 흡연, 휴대폰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☑ 배달 예정 지역의 지형, 도로상황 등을 숙지한다.(배송 전 안전운행 경로 미리 숙지)
- ☑ 이륜자동차 운행을 위한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한다.
- ☑ 이륜자동차 재해 사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는다.

###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, 제68조(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)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제5항